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998. 12. 5.

사회도시위원회

### 1. 검토과정

- 가. 안 건 명 : 99년도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지 적 과)
- 다. 제출일자 : 1998. 12. 1.
- 라. 회부일자 : 1998. 12. 2.
- 마. 검토일자 : 1998. 12. 3. ~ 12. 5(3일간)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고자 함.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의결)
-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4. 주요골자

○ 회 계 별 : 일반회계

○ 취득재산 : 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달서구 송현동 산55-12번지, 임야 62,512㎡(18,910평)

추정가액 : 120,000천원

② 노인회 성당2동분회 경로당 신축건물 1棟

달서구 성당1동 202-51번지 부지상 165㎡(50평)

추정가액 : 211,978천원

#### 5. 검토의견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된 재산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지난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에 의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시행령 개정전에는 「토지의 경우 10,000㎡이상이거나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물건」과 「건물의 경우 5억원이상의 물건」에 대하여 취득하고자할 때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의 경우 1,000㎡이상이거나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건물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의 물건」을 취득할때로 중요재산의 관리에 있어 의회의결대상이 강화됨에 따른것임.

- 금번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노인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은 2만5천여 달서구지역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한 것으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것으로 보아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으나, 앞으로 건축물건립시 소요될 40억원정도의 재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보문제와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됨.
- 성당2동분회 경로당신축은 98년 제1회 추경시 반영된 부지매입에 이어 성당1동 202-15번지 동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용중인 성당동 286번지상 2층건축물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함께 사용중인 복합건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모두가 협소하여 이용 노인이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인바,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경로당신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아 타당성이 있다할것임.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된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안의 편성전에 제출·의결을 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8년 11월 21일 예산안을 편성·제출후 뒤늦게 본안을 제출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됨.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 8.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32조(재활용단지의 조성등) ④시·도지사는 못쓰게 된 냉장고등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